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20

발의연월일: 2025. 5. 14.

발 의 자: 강경숙 • 이병진 • 김문수

황운하 · 서왕진 · 신장식

용혜인 • 윤종오 • 전종덕

차규근 • 정춘생 • 한창민

이해민 · 백승아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할 수 없고, 대학 교원이 아닌 교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운동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퇴직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,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교원이 원활하게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그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감선거에 입후 보하거나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임(안 제59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0518호), 「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 10521호)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519호),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80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, 같 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까지에서"를 "제4항까지에서"로 한다.

- 4의2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경우
- 4의3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육감선거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경우
- ② 제1항제4호의2 또는 제4호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휴직사유 및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제1항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립학교

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교육감선거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9조(휴직의 사유) ① 사립학교	제59조(휴직의 사유) ①
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
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	
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	
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	
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	
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	
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	
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	
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	
야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의2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
	법률」에 따른 교육감선거에
	입후보하려는 경우
<u><신 설></u>	4의3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
	법률」에 따른 교육감선거 관
	런하여 선거운동을 하려는 경
	<u>우</u>
5. ~ 13. (생 략)	5. ~ 1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제4호의2 또는 제4호
	의3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
	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

②·③ (생 략)

④ 제1항부터 <u>제3항까지에서</u>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(사립학교경영자 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 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으로 정한다.

<u> 거일 우 2개월까지의 기간 이</u>
내로 한다.
<u>③</u> ・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
과 같음)
<u>⑤</u> 제4항까지에서
,